

《倭人作拏臚錄》을 통하여 본 倭館

孫 承 喆

(전, 강원대학교수)

目 次

- I. 문제제기
- II. 交奸事件의 실태
- III. 《倭人作拏臚錄》의 교간사건
 - 1. 사건개요
 - 2. 왜관의 구조
 - 3. 체포
 - 4. 처형
- IV. 1711년 犯奸約條
- V. 맺음말

I. 문제제기

임진왜란에 의하여 단절되었던 조일관계가 1607년 제1차 회담경색환사에 의하여 재개되면서,¹⁾ 왜관의 기능이 부활되자 양국의 외교·무역업무를 위해 대마도 왜인의 거주가 허용되어, 왜관내에는 館守를 비롯하여 裁判·代官·東向寺僧·通詞·横目·目付·醫者·應匠·陶工·請負屋·水夫 등 많은 왜인들이 상주하였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²⁾

임란이후 왜관의 위치는 강화교섭이 재개되면서 처음에는 絶影島에 왜관을 설치하였었고, 1609년에는 己酉約條의 체결에 의해 왜관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豆毛浦에 왜관을 신축하여 통교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두모포의 왜관이 좁고 선착장이 불편하여 세건선의 정박이 힘들게 되고, 또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1678년에는 왜관을 草梁으로 이전하여 1872년 왜관이 明治政府에 의해 점령되기까지 195년간 초량왜관은 조일양국간에 외교·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³⁾

- 1) 임란이후 양국의 강화교섭과 국교재개과정에 대하여는, 李鉉淙,〈壬亂後의 對日關係〉(《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閔德基,〈壬辰倭亂 이후의 朝·日講和交渉과 對馬島〉 1, 2.《史學研究》 제39, 40집. 1989, 90. 동,〈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國史館論叢》 12, 1990. 李敏昊,〈朝鮮中期 對日外交研究〉(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7), 孫承喆,〈朝鮮後期 對日政策의 性格研究〉(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등에 상세하다.
- 2) 부산 왜관의 설치와 기능 및 직제등에 대하여는, 田代和生,〈近世日朝通交貿易史의 研究〉(創文社, 1982) 제7장,〈草梁 倭館의 設置と機能〉(孫承喆편,〈近世韓日關係史〉(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제5장, 부산왜관의 설치와 기능), 金義換,〈釜山の 草梁倭館과 對日通信使外交〉(《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등에 상세하다.
- 3) 草梁倭館의 존속연대를 일반적으로 1876년 江華島條約에 의해 日本專管居留地가 되면서 왜관이 폐지될 때까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즉 倭館이란 어디까지나 朝鮮이 朝鮮과 對馬島, 또는 朝鮮과 幕府政權간에 交隣

그런데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에 대표적인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邊例集要》 권 14, 雜犯條에는 왜관에 상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여인간에 발생한 交奸事件이 9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奎章閣에는 《倭人作拏膽錄》이라는 제목하에 1690년 교간사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⁴⁾

주지하다시피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시로 하여, 사회기강을 세운 나라로서 특히 남녀간의 윤리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왜관에 상주하는 왜인들에 의하여 왕왕 이 규범이 깨어졌고, 이것은 단순한 남녀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선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기가 일쑤였다.

예를들면 조선의 경우는 왜인과의 사이에 交奸事件이 발각되면 그 당사자는 물론 연루자들 전원을 효시 내지는 유배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여 기강을 세우려 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아 때로는 조

體制를 전제로 한 通交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은 1872년 明治新政府가 왜관을 점령하여 〈撤供撤市〉가 이루어지기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1872년 이후에도 외교교섭과 상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명치신정부를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交隣體制下에서의 왜관의 기능은 1872년 10월 〈撤供撤市〉에 의해 종말을 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이 〈倭人作拏膽錄〉은 1690년(숙종 16)부터 1692년 사이에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倭館作弊중 潛奸, 路存稅에 관한 기록으로 禮曹의 典客司에서 편찬하였다. 典客司란 예조에 소속되어 있는 세개의 관청(稽制司, 典享司, 典客司)중의 하나로 중국과 일본, 여진과의 교섭에서 사신의 파견과 영접, 연회, 조공이나 하사품 등을 주로 담당한 관청이었다. 《倭人作拏膽錄》의 내용은 (1) 1690년 4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왜관에서 일어난 조선여인 潛奸事件의 전말과 논죄의 기록. (2) 1691년 7월 22일의 東萊商賈定額節目 (3) 1692년 7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1691년의 節目을 어긴 潛商의 逮捕, 治罪에 관한 사항 등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筆寫本으로 크기는 40.7×26cm, 총58면으로 되어있다.(번호 : 12962)

선측에서 開市와 公作米를 撤供시키기도 했고, 왜인범죄자에 대한 同律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1711년에는 양국간에 중대한 외교문제가 되어 통신사 사행의 목적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특히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690년(숙종 16) 교간사건의 주요기록인 《倭人作拏膽錄》을 정리, 분석하여 교간사건의 社會史的인 意味뿐만 아니라 양국관계에서 교간사건이 차지하는 外交史的인 意味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이 조선후기 ‘倭館을 통하여 본 釜山人生活史 研究’의 한 계기가 되고자 한다.

II. 交奸事件의 실태

《邊例集要》에 의하면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교간사건은 총 9회에 달한다. 이것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倭館交奸事件 일람표〉

	연 대	동래부사	조선여인	공 모 자	치 리
1	1661(현종 2)	李元禎	良女 古公	朴善同	2인 館外효시
2	1662(현종 3)		私婢 自隱德	奴 無應忠, 金青男	5인 館外효시
3	1690(숙종16)	朴 紳	粉伊, 賤月 愛令	使令 李明元, 權祥, 李進壽 烽軍 徐富祥	李明元, 李進壽 옥사 그외 5인 館外효시
4	1697(숙종23)	李世載	玉郎, 善貞	金哲石	
5	1707(숙종33)	韓配夏	甘玉	部將 宋中萬	
6	1716(숙종42)	金始煥	季月	金以石, 趙守命	공모자효시, 季月유배
7	1726(영조 2)	李重協	娼女 金善陽	秋順弘, 朴召史	秋順弘효시, 金善陽, 朴召史 유배
8	1738(영조14)	鄭亨復	私婢 守禮, 良女 崔愛春	田才	田才 효시 守禮, 崔愛春 유배
9	1786(정조10)	閔 懋	良女 徐一月	高甲山등 5인	高甲山효시, 그외 유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邊例集要》에 수록된 9회의 교간 사건은 사건발생 연대로 보아 이중 1661년과 1662년의 두 사건은 豆毛浦 왜관에서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草梁 왜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9회의 사건이 왜관에서 일어난 교간사건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交隣志》禁條조에는 《邊例集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1859년(철종 10)의 교간사건이 나와 있고,⁵⁾ 일본측의 사료인 《交奸一件》⁶⁾에도 1671년(현종 12, 寬文 11)과 1699년(숙종 25, 元祿 12)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왜관에서 일어난 교간사건의 횡수를 정확히 알할 수는 없고, 위의 횡수는 그것이 탄로가 나서 사건화된 것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간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조선여인의 신분을 보면 良女·私婢·娼女·退婢 등 주로 하층계급의 여인이 많았고, 그에 연루된 공모자 내지는 유인자 역시 양인이나 노비 등이 많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使令 烽軍 部將 등 왜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자들이 직접 공모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交奸倭人の 직분은 주로 代官이나 禁徒倭로 모두가 양국의 통교를 직접 관여하거나 경비를 맡은 자들이었다.

-
- 5) 《交隣志》禁條條, 哲宗 10年. 己未에 左水營의 退婢가 왜인과 간통한 일이 발각 되었으므로 여자를 유인한 자를 효시하였다.(좌수영의 퇴비 錦紅이 문지기 金用玉에게 유인당해서 비밀히 왜관에 들어가 간통하였는데 이일이 발각되었다. 이에 府使 金鉞의 장계에 의하여 金用玉은 首犯으로 하여 관문밖에서 효시하고, 錦紅 및 그를 따르던 李文周는 엄한 형벌을 배풀어 섬으로 귀향 보내고, 犯人 倭人은 묶어서 對馬島로 보냈다).
- 6) 일본측의 기록인 《交奸一件》은 對馬島 宗家史料의 일부로써,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對馬島宗家史料 중 《分類紀事大綱》 31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이다.

교간죄인들에 대한 처리는 조선인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왜관 문밖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곳으로 유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왜관측에서는 양국사이에 약조가 되어있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그저 대마로 소환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왜관(대마도)에 대하여 조선인과 同律로 다스리도록 요구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관수왜에 대한 公作米를 撤供하기도 하였지만 별 진전이 없다가, 1711년 辛卯通信使의 파견을 계기로 하여 양국간에 외교문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犯奸約條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간사건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교간사건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 왜관에서 일어난 교간사건 중 특히 그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는 1690년(숙종 16)의 교간사건을 《倭人作拏膽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倭人作拏膽錄》의 교간사건

《倭人作拏膽錄》의 교간사건은 모두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동래부사와 경상감사가 1690년 경오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교간사건에 대하여 禮曹 典客司에 보고한 장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 소재목을 보면,

庚午四月十六日 我國女人潛奸倭人 把守將卒嚴囚訓導等論罪事(東萊府使狀啓)

庚午五月初三日 館中潛入女人 把守將卒等論罪事(慶尚監司狀啓)

庚午六月二十三日 倭館潛入女人終不捉出訓導等別樣勘罪東萊府使
請推事(慶尚監司狀啓)

庚午七月二十日 倭館潛入女人捕捉 交奸倭人同律處斷事(慶尚監司
狀啓)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교간사건의 전말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자.

1. 사건개요

1690년(숙종 16) 庚午 4월 16일자 《倭人作拏謄錄》에는 4월 초2일자 동래부사 朴紳의 장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에 臣이 거느리는 軍官 朴尚汶이 보고한 것에는, 水營 使令 李明元이 처와 딸, 그 여동생 등 3인을 데리고 왜관에 들어가 왜인과 더불어 서로 간음하였다 하는데, 부산인 寺奴 李進壽, 權祥 등이 함께 공모하여 왕래하였다고 합니다. 또 烽軍 徐富祥도 水營 아래 살고 있는 여인을 館中에 潛納 하여 倭人處에 값을 받고 通奸하였다고 하거늘, 각인을 즉시 잡아서 추고하였습니다.⁷⁾

즉 이 교간사건은 李明元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지만, 편의상 이명원의 妻·딸(粉伊)·여동생(賤月)이 관계된 〈粉伊·賤月交奸事件〉과 徐富祥이 공모한 〈愛今交奸事件〉사건 등 두개의 사건으로 구분하여 그 발단과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粉伊·賤月交奸事件〉을 보면,

李明元이 말하기를 1687년(숙종13) 丁卯 4월에 李進壽, 權祥 등에게 꼬임을 당하여 저의 처와 딸 粉伊, 그리고 여동생인 賤月이를 왜관안에 데리고 들어가 왜인과 교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만, 처는 이미 改夫하여 도주한지 몇년이 되었으며, 설혹 지금 있다하여도 어찌 왜인에게 팔아 음간을 자초하겠습니까, 공모질차는 李進壽등에게 추문하십시오.⁸⁾

7) 《倭人作拏謄錄》 庚午 四月二十六日條, 2쪽.

8) 《倭人作拏謄錄》 庚午 四月二十六日條, 2~3쪽.

라고 하면서, 왜관에 潛納女人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妻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함께 공모한 李進壽와 權祥은 고기를 팔아서 살아가는 자로 왜관에서 朝市⁹⁾로 왕래할 때에 왜인과 서로 안면이 있었다. 그들을 취조하니,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정묘년(1687년) 4월에 四代官倭¹⁰⁾ 井耳擡 左衛門, 忠兵衛, 二代官倭 延食只 등 3인이 우리 여인을 간절히 구하면서 銀 58兩을 주어서 이명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후 이명원의 처와 딸인 粉伊를 권상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진수는 禁徒倭¹¹⁾ 利兵衛, 判右衛門 두사람이 역시 여자를 구하며 銀 2兩 5전을 주거늘 명원에게 전하여 주고, 후에 명원의 여동생 賤月을 왜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¹²⁾

즉 權祥은 이명원의 처와 딸 분이를, 그리고 李進壽는 이명원의 여동생 천월이를 각기 왜인들에게 돈을 받고 교간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밤이 깊어 사람이 없는 시각에 宴享大廳에 몰래 들어가 낮은 담장을 넘어 왜관안으로 들어갔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왜관에 들어간 후에는, 명원의 妻는 한번 관중에 출입한 후 욕을 본 것이 분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여 갔다고 하고, 粉伊는 代官의 房에 있다고

9) 왜관의 東門인 守門 밖에서 조선상인이 매일 아침에 생선과 야채류를 가지고 와서 왜인에게 물건을 파는 아침시장을 말함.《增正交隣志》 권4, 朝市

10) 代官은 주로 무역의 매매교섭, 결재, 조선측에서 나오는 각종 지급물의 수취나 재촉 등 주로 경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交隣志》 差倭의 代官倭에 의하면, 인조 2년(1624) 乙亥에 島主 平義成이 代官 24인을 정하여 보내어公私의 무역과 매매를 전관하게 하였는데, 숙종 10년(1684)에 감하여 10인으로 하고 3년마다 교체하게 하였다. 그중 第1代官, 第3代官은 公買木米와 文書 등의 일을 주관하였는데, 3代官은 1년마다 교체하여 年條代官이라고 하였다.(田代和生, 앞의 논문, 4) 代官).

11) 禁徒倭는 倭館내에서 간사한 행동과 외람된 행위를 방금하는 직책으로 모두 22명이며, 1년마다 교체하였다.《交隣志》 差倭條)

12) 《倭人作拏膽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3~4쪽.

하였으며, 賤月이는 나이가 많아 팔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한편 〈愛今交奸事件〉은 徐富祥을 추고한 결과 자백하기를,

지금부터 5~6년전 日月을 모르지만, 지금은 죽었는데 이명원의 동생으로 之石이라고 칭하는 자가 愛今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여자를 구하는 고로, 수영 아래에 살고 있는 私婢인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하거늘, 같이 왜관의 酒房에 가서 왜인 馬太守라는 놈에게 銀 3량을 받고 허락하였습니다. 之石과 함께 데리고 간 것이 두번이고, 내가 혼자 데리고 간 것이 네번인데, 매번 銀 3량을 받았습니다.¹³⁾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래부에서는 愛今이의 소재를 확인하여 金海 萩山倉에서 체포한 후 심문하니, 애금이가 자백하기를

제가 19세때인 丙寅年(1686) 8월, 李三石과 그의 형 明元의 꺾임을 받아, 부산 訓導處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갈때는 男服을 하였는데,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따르지 않자, 명원이는 訓導를 자칭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속이려면 이같이 변복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한곳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잠입하게 되었는데, 저는 비로소 팔린 것을 알고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명원이는 칼을 빼어들고 겁을 주었고,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약한 여자로서 감히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酒房에 잠입하여 왜인 馬太守라는 놈과 교간하였으며, 명원은 銀 6량을 받았습니다. 저는 옷을 빼앗기고 나쁜 소행을 하였습니다. 왜인은 서부상에게 저를 맡기었으며, 그후는 부상이가 데리고 왕래하였으며, 받은 돈으로 贖良하였습니다. 交奸 倭人은 馬太守라는 놈으로 이름을 바꾸어 四古沙門이라 하는데, 지금은 이미 돌아갔으며 4代官 食只衛門이라고 칭하는 왜인입니다.¹⁴⁾

13) 《倭人作拏膽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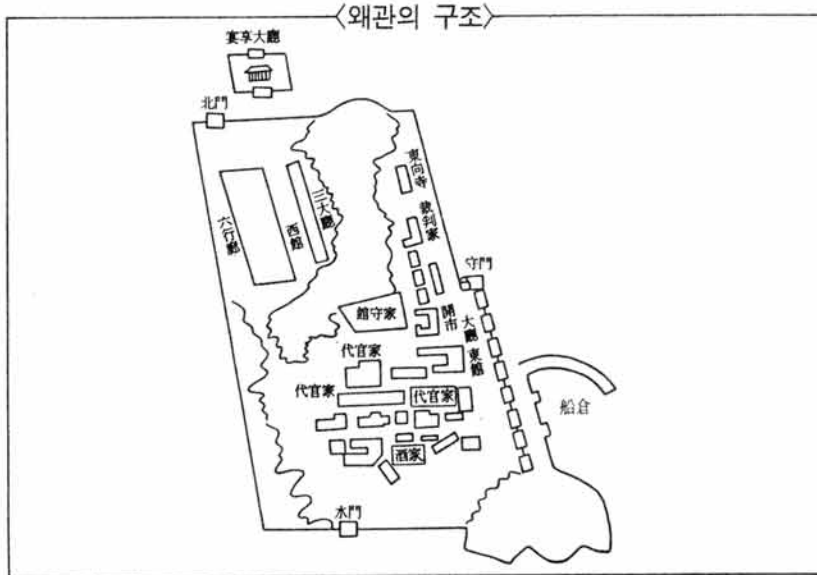
14) 《倭人作拏膽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4~5쪽. 李明元 동생의 이름이 之石과 三石으로 나오지만,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라고 하였다. 즉 이 내용을 보아 이명원은 처와 딸, 그리고 여동생 賤月이를 교간시키기 전에 이미 그의 동생 之石·徐富祥과 공모하여 사비인 愛今이를 꼬여서 교간사건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이들 두 교간사건이 발각된 것은 1690년 2월이지만 그것이 발생한 것은 이미 4년전이 1686년 8월과 1687년 4월의 두차례였다. 그리고 교간의 댓가로 상당한 양의 銀貨를 받은 愛今이는 이 돈으로 속량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교간하였던 왜인은 代官 및 禁徒倭로써 왜관내에서 무역을 직접 관장한다든지, 경비를 담당하였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倭館의 구조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출입경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왜관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자.



*위의 그림은 국립박물관 소장 倭館圖(卞璞筆)을 모사하였음.

이 그림에 의하여 왜관의 구조와 경관에 대하여 보면, 동서가 372보 4척, 남북이 256보로 6척을 1보로 계산할 때 동서 677.5미터, 남북 465.4미터가 된다.¹⁵⁾

남쪽과 동쪽은 바다에 접하였고, 내부는 龍頭山을 경계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東館에는 관수의 숙소겸 집무소인 館守屋을 비롯하여 開市大廳·裁判屋(이상을 三大廳이라고 함) 東向寺·通詞屋·神社가 있고, 해안쪽으로는 水夫屋·浜番所·倉庫 등이 있다. 또한 西館에는 서쪽의 三大廳(副特船, 第1船, 參判屋)이라는 사절단의 숙박소와 六行廊이 나란히 있다. 왜관의 담장은 처음에는 6척 높이의 土牆이었는데, 1709년 돌로 축성하여 개수하였다고 한다.¹⁶⁾

그리고 이 담장에는 세곳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水門(無常門: 서남쪽의 문으로 1間이며, 관내의 일본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운반하는 문으로 열쇠는 조선측에서 관리하였다), 北門(宴享門: 1間으로 일본사신이 연향 대청에 출입할 때 이용한 문으로 東伏兵將이 지키며 항상 봉쇄하였고 열쇠는 조선관리가 관리하였다), 東門(守門: 왜관의 정문으로 12間이며 東萊 釜山將校 각 1인·通事 2인·門直 2인이 수직하고, 동래부사가 발급한 帖文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가 있다)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에 대하여 항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왜관담장 밖에서 왜관을 경비하기 위하여 伏兵幕을 설치하였다. 복병막은 처음에는 동·남·서 세곳에 설치하여 각 鎭將의 將校 1인과卒 2인으로 하여금

15) 《增正交隣志》권3, 館宇에 의하면 〈館基自東至西三百七十二步四尺 自南至北二百五十六步 倭俗以六尺爲一步〉로 되어 있는데, 1尺을 30.3센치미터로 계산하여 보면 대략 이 길이가 된다. 물론 史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만평내외의 규모가 된다.(田代和生, 앞의 논문).

16) 《通文館志》권 7, 人物(洪舜明)條.

윤번하여 월장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나, 1739년(영조 14) 교간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다시 3개처가 추가되어 6곳으로 증설하였다.¹⁷⁾

이상에서 언급한 왜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교간사건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사건의 발단은 水營使승이었던 이명원이 四代官 食只衛門의 청을 받아, 처음에는 1686년 8월, 자신의 동생 之石·徐富祥과 공모하여 金海에 사는 私婢 愛今이를 꼬여서 男服으로 변장시켜 담을 넘어 왜관에 잠입하여 酒房으로 가서 교간을 시켰으며, 그 댓가로 은화를 받았으며, 애급이는 그 돈으로 속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이듬해 1687년 4월에 다시 평소 朝市에서 안면이 있던 二代官 延食只, 四代官 井耳擻左衛門, 忠兵衛 등 3인의 청을 받아 權祥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자신의 妻와 딸 粉伊를 데려다 주도록 하였고, 다시 禁徒倭 利兵衛, 判右衛門의 청을 받아 李進壽로 하여금 자신의 여동생 賤月이를 데려다 주어 교간케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밤이 깊은 시각에 왜관 북쪽에 있는 宴享大廳을 통하여 왜관에 이르러 북문 근처에서 당시는 아직 土牆이었던 낮은 담장을 넘어서 왜관안으로 들어 간후, 먼저 東館에 있는 酒房으로 가서 왜인과 교간하였던 것이다.

3. 체 포

이 교간사건이 일어난지 3년후의 발각된 경위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동래부사 朴紳은 1690년 2월 軍官 朴尚汶의 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즉시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여 모두 잡아 들여서 推問한

17) 《增正交隣志》권 3, 館宇에는 이 내용과 함께 각 伏兵幕의 위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어 왜관 潛越에 대한 경비의 상업함을 잘 알 수 있다.

결과를 4월 초2일에 장계하였다. 이 장계에 의하면 교간사건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도록 하였으나, 체포된 자는 李明元, 李進壽, 權祥, 徐富祥, 愛今 등 5인이었으며, 이명원의 딸 粉伊와 여동생 賤月은 왜관안에 있어 체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래부사는 분이와 천월이를 체포하고자, 군관 무사로 하여금 館外를 파수하여 몰래 나가 도망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한편, 관수왜에게 훈도와 별차를 보내어 책임을 추궁하고 여인들을 찾아내어 提出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館守倭등도 놀라며, 犯罪倭人을 잡아서 구류하겠다고 하면서, 여인이 숨어 버렸고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 提出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

훈도 등이 다시 핑계대는 사연을 묻자, 관수왜는

일본의 법은 본래 房舍를 수색하는 법이 없고, 犯倭등이 水刑을 당하여 죽는 경우가 있어도 자백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몰래 여인을 죽여 합구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¹⁸⁾

라고 하면서 더욱 핑계를 대었다. 그러자 동래부사는 훈도를 통하여 관수왜에게 일러 전하기를,

지금 여인이 왜관에 잡힌 것은 막대한 번이거늘, 관수가 핑계를 대고 잡아 보내지 않는 것은 가히 놀랄만한 일이다. 장차 결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선 啓聞하여 관중왜인에게 일공하는 米價·紫炭 등 물자를 첩파하고, 米·公木 등도 주지 말고 차차 첩회할 것이며, 한편 對馬島中에 글을 보내어 島主를 책유하면, 너희들은 죽고도 남을 죄이나 遠人の道에 일체의 법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니, 우선 이로써 개유한 즉, 너희들은 스스로 알고 굴복하여, 독려하여 나오게 하라.¹⁹⁾

18) 《倭人作孽臚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7쪽.

19) 《倭人作孽臚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8쪽.

고 독촉하였다. 그러자 관수는 왜관 밖의 파수를 한결같이 엄밀히 하여 첩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館外把守를 첩과한다고 소문을 내면 여인들이 스스로 나와 잡혀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館中에서 여인이 잡혀 나오게 되면 館守 이하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추궁받게 되므로 몰래 여인을 관 밖으로 내어보내 잡히게 하는 계책이었고, 요행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책이었다고 동래부사는 파악하고 있었다.²⁰⁾

이어 동래부사는 교간죄인들을 粉伊와 賤月을 잡아들인 후에 함께 처벌하려고 하였지만, 한달 이상 지나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李明元 李進壽 등은 足杖한 후 아직 刑을 정하지 않았으나, 옥중에서 병으로 죽었음을 알리고 나머지 죄인들의 처벌을 품게하였다.

그후 5월 초3일 경상감사 吳始大의 장계에 의하면, 동래부사 朴紳은 왜관을 지키는 파수장졸들이 경계를 엄히하지 못하여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심문한 결과 교간죄인들이 잠입한 날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愛壽은 1686년(丙寅) 8월 초6일 처음 倭館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몰래 왕래하였으나 근년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權祥에게 기일을 심문한 즉 分이와 賤月은 1687년(丁卯) 4월 초1일에 처음 왜관에 들어간 후, 粉伊는 왕래를 끊었었으나, 賤月은 1689년(己巳) 11월 초 6일에 다시 왜관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모두 東西伏兵의 관할지역인 宴享大廳과 북쪽 담장밖의 은밀한 곳으로 潛入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해당날짜의 東西伏兵을 조사한 결과 私奴 裴俊日, 文忠男, 李學 등으로 밝혀졌고, 이들에 대한 구금이 지시되었다.

이어 훈도·별차를 통하여 粉伊와 賤月이를 죽출하는 일을 재차 독촉하면서, 이때부터 犯奸倭人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 《倭人作拏膽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 8~9쪽.

辛丑(1661), 壬寅(1662) 양년에도 일찌기 이같은 변이 있었으나, 범죄왜인을 同律로 다스리지 못하여 探試之計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臣이 등록을 보니 辛丑(1661) 5월의 일로 故判書 臣 李元禎이 부사때의 일인데, 府에 사는 良女·私婢 등 6인이 왜인과 더불어 교간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을 받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히 東邊之民(倭人)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이같은 일이 또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수치이며 저들이 법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壬寅(1662) 6월 故 監司 李星徽가 府事때의 일로, 府에 살던 私婢 自 隱德이 왜관에 잠입하여 왜인과 더불어 몰래 세번이나 교간하다가 탄로가 나서 법에 의하여 처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倭館에 영을 내려 해당 관리가 館守를 책유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 왜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왜인이 어떻게 처치하였는지는 本府 謄錄 중에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것은 비록 알수가 없으나, 피차 同律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인의 情狀이 狡詐하여, 먼저 同律여부를 누차 말하지만, 그 뜻은 犯罪倭人을 비호하려는 계책입니다.²¹⁾

라고 장계를 올려, 조선측의 죄인 뿐만 아니라, 왜관측의 범간왜인도 모두 조선죄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同律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촉구하였다.²²⁾ 범간왜인에 대한 이러한 同律 적용의 요구는 이후 양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1711년 辛卯通信使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마와의 約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21) 《倭人作孽謄錄》 庚午五月初三日, 14~5쪽.

22) 이 내용은 《邊例集要》와 《朝鮮王朝實錄》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邊例集要》에는 왜관에서 끝내 잡아 보내지 않는다면 日供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肅宗實錄》에는 同律處斷할 것과 館守倭 등의 처벌을 對馬島主에게 移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肅宗實錄》 권 22, 肅宗 16년 7월 甲辰, 《東萊館倭 歲匪我國女人二名 訓導別差等 告于府使朴紳 紳以聞 備國覆奉 請以犯罪人及交奸倭人 同律處斷 館守倭禁徒倭等 罪狀 移之馬島 上可之》

관수왜에 대한 훈도 별차의 연이은 책유에도 불구하고, 분이와 천월에 대한 提出件은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에 범간왜인 二代官倭는 대마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館守交代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시일을 지연시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大臣과 備局堂上會議를 열어 동래부사도 문책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래부사는 당연히 훈도 별차를 엄하게 신축하고 극력 개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정을 귀찮게 하면서 일을 더욱 부당하게 만들었으니, 동래부사 및 훈도 별차는 따로 따로 科罪하여 조정에 尊重之意를 보이고, 狡倭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新府使 新訓別을 즉시 차송하여 관수왜를 책유하도록 하고 끝내 내보내지 않은 즉, 日供을 철파함이 옳으며, 동래부사 朴紳 訓導 別差는 함께 잡아가두어 심문함이 가하다.²³⁾

고 하여, 결국 交奸事件으로 인하여 당시 경비를 맡았던 東·西伏兵은 물론, 館守倭를 책유하였던 訓導 別差, 그리고 東萊府使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4. 처 형

이로부터 약 한달후, 7월 20일 경상감사 吳始大는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하여 분이와 천월의 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本府(동래부) 別武士 丁汝贊, 훈도 朴再興, 별차 朴世亮이 進告한 것에, 왜관 잡입여인 粉伊, 賤月이 잡혀 왔다고 보고하기를 추고한 것이 庚午 7월초 8일이었습니다.²⁴⁾

23) 《倭人作拏曆錄》 庚午六月二十三日, 30쪽.

24) 《倭人作拏曆錄》 庚午七月二十日, 31쪽.

그들을 심문한 결과 자백하기를, 粉伊는 년월은 기억할 수 없으나 13세때에 권상의 폐임을 받고 父 명원, 권상과 함께 草梁에 가서 宴享廳의 낮은 담장을 넘어 왜관에 들어가 二代官倭 延食只와 그를 따르는 왜 素沙門과 鷹房倭 素尤食只등 3인과 서로 통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일이 발각이 되자, 同代官倭의 집 누각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있었는데, 어제 왜인이 와서 이일은 이미 끝났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여,²⁵⁾ 賤月과 같이 멀리 도망하여 피하기 위하여 왜인복색으로 갈아입고, 왜인과 함께 선창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舊館에 도착후 포에 내려 沙川村을 향하려 하다가 잡히게 되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또한 賤月은 壬戌(1682)년 통신사 행차시 이미 죽은 부산인 李砲手라는 자의 꼬임에 빠져 처음 관중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죽은 加兵衛倭와 교간하고 5일을 머무른 뒤 나왔다고 하였다. 또 丁卯(1687)년 4월 李進壽의 꼬임으로 다시 입관하여, 처음에는 以酌庵 正官倭 海如門과 그가 돌아간 후에는 小禁徒倭 沙如門, 都禁徒倭 汗禮門, 伊惠衛등 4인과 서로 통간하였는데, 粉伊와 함께 같은 배로 나와 장차 沙川을 향하려 할 때에 일행이 함께 잡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잡히기전 얼마동안이나 왜관에 머물러 있었을까. 粉伊의 경우는 처음 入館하여 교간한 것이 13세때인 1687년 4월이라고 앞서의 東·西伏兵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왕래를 끊었다는 기록만 있지, 다시 나왔던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687년 4월 입관한 이후 1690년 7월까지 왜관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賤月の 경우는 1682년 통신사 행차시 처음 입관하였다가 5일

25) 이 내용에 관하여 일본측의 기록에는 <倭館內에 조사가 심해지자 여자를 도망치게 하였다. 여자가 왜관밖에서 잡히었기때문에 왜관내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앞의 宗家史料 <分類紀事大綱>31, 7월 21일조)고 기록하고 있다.

만에 나왔고, 그후 1687년 4월에는 분이와 함께 입관하였다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왔다가, 1689년 11월 초에 세번째로 입관한 후,²⁶⁾ 1690년 7월까지 왜관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측의 宗家史料인 《分類紀事大綱》 31, 元祿六月三日자 취조 문에는 이들의 입관을 軍官 朴尚泐에게 발각되기 하루전이 2월 23일로 자백하고 있어, 그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粉伊와 賤月이를 체포한 후, 동래부사 朴紳은 왜관잡입여인을 시일이 오래 지난 지금에야 발각한 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면서, 종래 潛商人 처벌때에는 조선인을 먼저 처벌하고 왜인도 同律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음을 한탄하며, 신임부사의 부임후에 왜관잡입여인과 교간왜인을 同律로 처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倭人作拏騰錄》의 기록은 위의 狀啓와 이것을 윤택한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따라서 이 기록만으로는 더 이상의 처리과정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후의 사건전개에 관하여는 《邊例集要》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의 宗家史料인 《分類紀事大綱》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邊例集要》에도 7월조에 粉伊, 賤月 등이 왜관으로부터 밤을 타서 몰래 나왔던 고로 잡아들여 취조하여 가두었으며, 新府使의 부임을 기다린 후에 처단할 것이라고 치계하였다고 한다.

8월이 되어 新任府使 南暉는 범간왜인을 同律로 처단할 것과 여인을 몰래 관중에 숨겨두고, 내어보내지 않은 죄를 관수왜에게 책유하였다. 이에 대해 관수는

26) 《倭人作拏騰錄》, 庚午四月二十六日條(6쪽)에 李明元의 공초중, 〈賤月이는 四寸으로 친한 까닭에 작년 11월 초3일 집에 왔사오며, 초 5일무렵 李進壽가 와서 데리고 간 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지 못하옵니다〉는 내용으로 보면, 權祥의 심문 내용의 11월 초6일과 거의 일치한다.

봄에 여인이 입관하였다는 말을 듣고, 조사하여 찾도록 명령하였지만 끝내 찾을 수 없다가 어느날 멀리 밖에서 잡았다고 들었다. 당초 왜관에 있었다면 어찌 속인 것이겠는가.²⁷⁾

라고 변명을 하였다. 그리고는 奸倭를 同律하는 것은 종래 淫奸이 있을 때에도 한두번 요구한 것이 아니나, 일찌기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약조에 없는 바이기 때문이며, 同律之意의 일은 수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왜관내에 조사가 심하여지자 여자를 도망치게 하였으며, 여자가 왜관밖에서 잡히었기 때문에 왜관내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기록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허위임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왜관에서는 이미 2월 26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자 停職중이던 범간왜 4인을 이미 대마에 귀환시켰고, 6월 11일부터는 이중 3인을 다시 직무를 보게 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이들에게 왜관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²⁸⁾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宗家史料 중 交奸事件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分類紀事大綱》 31책의 사료를 간단히 요약하여, 당시 왜관 및 대마측의 입장을 비교하여 보자.

〈宗家史料 《分類紀事大綱》31 交奸一件要約文²⁹⁾〉

* 4월 10일

먼저달 17일 동래로부터 兩判事에게 근일중에 巡察使가 동래에 와서 관내 여인 유치사건을 조사할 것이니,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이 있었다.

27) 《邊例集要》 권14, 雜犯, 庚午(1690) 8월.

28) 앞의 史料, 《分類紀事大綱》31, 6월, 7월조.

29) 이 자료는 日本 取島大學 池内敏教授로부터 빌려 보았으며, 名古屋大學 高橋公明教授와 함께 내용을 요약하였다.

* 4월 14일

朴僉知(東萊府使)가 파직되었다고 들었으나, 다시 재임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5월 28일

지난 겨울 11월초에 진세(李進壽)라는 조선인에게 紬木棉등이 필요하여 銀子 65뭉뎀을 먼저 주었는데, 그후 물건이 없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래서 재촉을 하니 大工 利右衛門에게 물건대신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4-5일만 맡아달라고 하여 여자를 대신 맡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6일 관수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 6월 3일

사건을 보고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마도에서 조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되었다.

사건의 진상인즉은 지난 2월 23일 왜관안에서 조선여인이 누구와 약속을 하여 약속장소에서 그를 기다렸는데, 약속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날이 저물어 가자 지나는 나(井手惣右衛門)에게 사정을 말하여 내가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하던 중이었다.

* 6월 11일

관내의 여인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3인이 정직중이었으나 다시 임명하였다.

* 7월 11일

관련된 4인을 대마에 있으면서 조선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명령하다.

관련 4인의 명단제시.(井手總左衛門, 市山伊兵衛, 日高利右衛門, 大工 小嶋利右衛門)

* 7월 12일

그러나 이들중 大工 小嶋利右衛門이 代官을 보좌하여 벌써 조선에 갔다고 보고하다.

* 7월 21일

왜관내에서 조사가 심해지자 여자를 도망치게 하였다. 여자가 왜관밖에서 잡히었기 때문에 왜관내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 8월 13일

大工 小嶋利右衛門이 吉丸편으로 대마에 돌아갔다.

* 10월 8일

입관여인 3인, 유인한 남자 2인등 5인을 참죄하였다는 보고하다.

* 10월 21일

9월 29일 입관사건에 연루된 조선인 5인을 참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그들에게서는 통보가 없었다.

* 11월 12일

동래로부터 조선인 처형 소식과 함께, 일본인도 같은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벌써 용서하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를 대마도에 물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양측의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왜관측에서는 대마도에 대하여 이 사건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건이 발각되고 난 후에는 왜관과 대마도가 서로 협조하여 책임을 회피해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한편 신임부사의 장계를 받은 후, 조정에서는 왜관과의 禁條증에 피차간의 범죄자는 館外에서 형을 집행할 것을 특별히 一條로 禁條에 넣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번의 잠입교간은 범죄에 해당되나 끝내 同律로 처리하지 아니하니 동래부에서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어 同律로 하도록 촉구하되, 여인 분의와 천월은 먼저 관문밖에 효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愛今 및 공모자 權祥和 徐富祥의 처리를 문의하니, 이들 다섯 사람을 모두 1662년(壬寅, 顯宗 3)년의 예에 따라서 함께 관외에 효시하고, 파수한 각인의 죄상은 본도(경상감사)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엄단하도록 회계하였다.

이들의 처형에 관한 기사는 《邊例集要》 권14, 庚午(1990년) 9월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肅宗實錄》에는 숙종22년 10월 계해(6일)조³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측의 《分類紀事大綱》에는 9월 29일 坂下와 和館사이에서 이들 5인을 참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이들을 처형한 후, 동래부사 李衡詳은 계속하여 島中移書에 의하여 同律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約條를 고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것이라고 치계하자, 조정에서는 島中移書는 계속하되, 對馬島主가 江戶로부터 돌아오는 것³²⁾을 기다려 문위역관이 갈 때에 미진한 곳을 고치어 송부하도록 하였다.

30) 《肅宗實錄》권22, 肅宗 16년 10월 癸亥, 〈泉示東萊館倭交奸女人愛今等三人及引誘潛致 於倭館者權祥徐富祥等於倭館門外〉

31) 앞의 《分類紀事大綱》元祿三年 十月八日之日帳.

32) 이 제도를 參勤交代라고 하는데, 江戶時代에 德川幕府는 전국의 大名을 일정한 간동안 將軍이 있는 江戶에 參勤시켜 그들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활용하였다. 원칙적으로 1년은 在國(자신의 임지), 1년은 江戶에 參勤하였고, 동시에 妻子는 江戶에 남아있어 인질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對馬島主 宗義眞은 1990년 3월 15일 대마도를 떠나 參勤을 한 뒤, 이듬해인 1991년 4월 20일 대마도에 돌아왔다.(田中健夫外,《前近代對外關係史의 綜合的研究》,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980. 124쪽, 義眞參勤交代代表, 참조)

한편 왜관측은 동래로부터 조선인 처형소식과 함께 일본인도 같은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왜관에서는 이미 이들을 용서하여 대마로 귀환을 시켰는데, 차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를 대마도에 물었다.³³⁾

이후 양국에는 이 교간사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후의 전개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邊例集要》에는 1693년 11월 부사 成璫때에 犯奸倭를 同律로 처리해 줄 것을 島主에게 移書한다고 하니, 왜관의 裁判倭는 피차간에 대면도 아니한 채, 증거도 없고, 사람도 다 죽어 흔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同律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경히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⁴⁾ 그후 양국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IV. 1711년 犯奸約條

犯奸倭를 同律之罪에 적용하는 약조가 맺어지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1707(숙종 33)년 12월의 <甘玉交奸事件>이다. 《邊例集要》 권14, 정해 12월조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부사 韓配下의 때에 部將 宋中萬이 여인 甘玉을 데리고 왜관에 잠입하여 왜와 더불어 교간하다가 일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犯奸倭를 잡아 가두고 同律로 적용할 것을 관수에게 책유하니, (관수는) 犯奸倭同律을 금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성신의 도가 아니라 운운 하면서 끝내 회답이 없었습니다. 謄錄을 살펴보면 왜인이 교간을 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고, 同律의 뜻을 누차 책유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물을 것도 없습니다.³⁵⁾

33) 앞의 《分類紀事大綱》元祿三年十一月十二日 平田所左衛門へ遣.

34) 《邊例集要》 권14, 雜犯, 癸酉(1693) 11월조.

35) 《邊例集要》 권14, 雜犯, 丁亥(1707) 12월조.

라고 램를 올리니,

다시 책유하고 회답을 기다려라. 부산첨사는 재판에게 엄하게 따지고, 끝내 듣지 않으면 도주에게 移書를 하되, 부사는 가볍게 청하거나 묻는 일이 없도록 하라.³⁶⁾

고 회계하였다. 그 이듬해, 1708년 2월 부산첨사는 館守倭에게 同律의 뜻을 누차 책유하였으나 전혀 회답이 없다고 하면서, 피차간에 同律之意를 約條중에 삽입하여 영구히 定式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서 約條란 대마도 또는 왜관과의 사이에 맺은 여러가지 약조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增正交隣志》 권4 約條와 《邊例集要》 권5 約條에 자세하다. 특히 동래부사나 관수왜와의 사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약조는 1683년(숙종9)에 壬戌通信使가 대마도에서 정한 약조를 말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은

- 一. 境界를 정한 밖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밖으로 나와 경계를 범한 자는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 一. 路浮稅를 행한자를 현장에서 잡았을 때는 준자나 받은 자나 모두 사형에 처한다.
- 一. 開市때에 各房에 잠입하여 密賣를 한자는 피차간에 사형에 처한다.
- 一. 五日雜物을 들여 보낼때에 色吏 庫子 小通事등은 왜인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지 말 것.
- 一. 피차간에 범죄를 행한자는 모두 관문 밖에서 형을 집행할 것.

등인데, 대마도 봉행 平眞賢등 5인이 書名을 하여 가져와, 이것을 돌에

36) 위와 같음.

새겨서 왜관밖 경계³⁷⁾를 정한 곳에 세웠다 한다.³⁸⁾ 이외에도 《增正交隣志》에는 館守倭가 다시 청해온 약조 8개항이 나열되어 있으나 交奸에 관한 조항은 없다.³⁹⁾

그후 9월이 되자, 관수왜는 일본에서는 唐人과 交通한 倭女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죄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구나 약조에도 없는 죄를 어떻게 同律로 다스리겠는가라고 반문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交奸女人과 同情人은 우선 처단을 하고, 차후에 도해역관을 보낼 때에 島中移書하여 同律之罪를 약조에 삽입하자고 치계하여 그렇게 하였다.⁴⁰⁾

그러나 이듬해 1709년 4월, 渡海譯官편에 甘玉을 교간한 왜인을 同律로 촉구하는 서계를 송부하였으나 받지 않자, 兩譯이 사력을 다하여 지금 서계를 받지 않으면 장래 江戶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끝내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兩譯을 임무를 소홀히 한 죄로 정배시키고, 犯奸倭人은 부산첨사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재판의 서계도 조선쪽에서 거부하였다.⁴¹⁾

37) 倭館의 境界에 관하여는 《增正交隣志》 권 4, 約條, 숙종 5년(1680)조에 〈己未(1679)에 新館의 界限을 정하였다. 동쪽으로는 松峴에 이르기까지 館과의 거리가 3백 보쯤되고, 서쪽으로는 西山에 이르기까지 관과의 거리가 80보쯤되며, 서남쪽으로는 草梁 民家에 이르기까지 관과의 거리가 1백보쯤되고, 남쪽으로는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관과의 거리가 1백보쯤 되게 한다〉고 되어 있다.

38) 현재 釜山市立博物館 야외전시장에는 〈約條制札碑〉(부산기념물 제17호)가 전시되어 있는데, 비문의 내용이 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세운 約條의 禁標(《增正交隣志》에는 標木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같은 내용을 나무에도 써서 여러 곳에 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로 추정된다.

39) 《增正交隣志》 권 4, 約條, 九年癸亥信使在馬島定約條. 館守倭又請申約條.

40) 《邊例集要》 권14, 己丑 9월조.

41) 《邊例集要》 권14, 雜犯, 己丑(1709) 4월조.

그후 5월부터는 犯奸倭의 同律問題와 1704년이래 단절되었던 彦千代 圖書⁴²⁾의 발급문제가 결부되어 여러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1710년(숙종 36)에 들어서면서 왜관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여 갔다.

3월에는 동래부사 權以鎭으로부터 6개항에 달하는 건의문이 상계되었다. 그 내용은 역관과 초량왜관 왜인의 居住紊亂, 交易定價에 대한 논쟁, 譯官에 의한 부정적인 人蔘交易, 대마도주로부터 訓導에의 受給, 훈도 별차에의 增給, 중국생사를 역관이 왜인에게 전매하는 것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앞의 세가지는 정지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논의만 되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⁴³⁾

4월에는 朝市에 간 조선여인과 왜인사이에 밀통이 많아 동래부사가 이를 금지하자 왜인들이 館外脫出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치한 죄로 훈도

42) 彦千代圖書란 兒名送使인 대마도주의 아들 이름으로 발급되는 도서로서, 그 기원은 1452년 宗成職이 도주 습직때에 그의 아들의 어릴때의 이름(兒名) 千代熊丸에게 도서가 발급된 것에서 비롯된다. 임란후 통교가 재개되자, 1611년 종의지는 아들 彦三(후에 義成)의 圖書발급을 조선에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宗義智의 조일외교에 기여한 공적을 생각하여 그해에 도서를 발급하여 주고 사송선의 도항을 허가하였다. 그후 1615년 義成이 도주가 된 후에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 1657년 義成이 죽자 반납하였다. 한편 義成의 嫡子 彦滿(후에 義眞)도 부친의 예에 따라 圖書를 청구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앞서 彦三의 圖書가 반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발급하지 않다가 1642년에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1642년부터 1657년까지는 兒名送使가 2척인 셈이다. 1654년 彦滿이 도주가 되면서 彦滿送使는 이름을 <平義眞送使>로 바꾸어 1702년 義眞이 죽을 때까지 使送船이 파견되었고 1704년 반납되었다. 여기서 彦千代란 彦三 彦滿의 彦과 千代熊丸의 千代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第1部 第3章, <渡航船增加工作とその種類>, 創文社, 1982, 78쪽. 孫承喆, 柳在春역, 《近世韓日外交秘史》제5장, 補論, 1987, 강원대학교출판부, 216쪽).

43) 《肅宗實錄》 권48, 숙종 36년 3월 갑오.

별차가 경상좌수사에 의해 杖刑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이 내용을 《肅宗實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인이 초량촌에서 나온 이후에는 閭閻에 출입할 수가 없어서, 매번 조시 때마다 아국 남녀가 간다. 그런데 남자가 가지고 가면 비록 팔지 못할 물품이라도 여인이 가지고 가면, 나쁜 물건이라도 반드시 팔기때문에 朝市에 가는 자는 모두 여인이다. 동래부사 權以鎭이 草梁 釜山 海夫村人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단지 魚菜만을 파는 것이 아니고, 너의 妻女를 파는 것이다. 너희 역시 사람인데 어찌 이것을 참겠는가하니, 이때부터 여자를 보내지 않고 남자를 보내었다. 그러자 왜인들이 魚菜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부북불 무역을 구하며 禁標 밖으로 나왔다.⁴⁴⁾

그리고 館守倭와 一代官倭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公作米를 撤供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1707년 甘玉交奸事件에 대한 同律을 촉구하는 서계를 계속 대마도주에게 보내었다. 그 예로 5월에는 裁判의 말중에 圖書를 청하러 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답서를 받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島主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조선측의 서계를 받지 않고 돌아가려고 승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⁵⁾

드디어 7월이 되자, 조선에서는 간왜여인 甘玉과 공모자 宋仲萬을 법에 의하여 관문밖에 효시하고, 역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관수왜에게 알리어, 만약 圖書를 얻을 뜻이 있으면 犯奸倭人을 참수하여 그 머리를 가져와 사죄하면 그 벌하는 뜻이 풀릴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왜관으로부터는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44) 《肅宗實錄》 권48, 숙종 36년 4월 정미.

45) 《邊例集要》 권14, 庚寅(1710) 5월조.

그러자 이듬해 1711년 5월, 비변사에서는 犯奸倭에게 同律을 적용하는 것을 馬島에서는 약조를 핑계로 시종 거부만하고 있으니, 이번 사행이 저쪽에 도착한 후, 피차간에 同律勘罪의 뜻을 약조로 정할 것을 전교를 받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⁶⁾

그리하여 약조를 체결하는 문제는 결국 1711년 辛卯通信使에게 위임되었고, 三使는 江戶 체류중에 대마도주 宗義方에게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마측에서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장군에게 직접 탄원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당황한 對馬奉行은 일을 급속히 추진하여 드디어 교간에 관한 새로운 약조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辛卯通信使 副使 任守幹은 《東槎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몇해 전에 館倭 源七이 부산여인을 범간한 일이 있었는데, 대마도에서 끝내 형벌을 쓰지 않으므로 朝家에서 약조를 정해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신일행이 江戶에 머무를 때, 이 문제를 논란하였으나 도주가 자못 어렵게 여기는 뜻이 있었고, 또 도주에게 서계를 보냈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 세 사신이 상의하여 關白을 하직할 때에 글을 올리면 흑기 변동이 있을까 하여, 한편으로 書草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奉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더니, 奉行들이 약간 황겁한 기색이 있었다.

通譯官을 島主 집에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려 하자, ‘約條 사항에 強姦·和奸을 묻지 않고 다 같은 죄로 단정한다면 大明律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니, 차등을 두어 죄를 정하면 사리가 당연할 것입니다. 꼭 島主 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기에 드디어 그 말에 따라 약조를 써서 奉行을 도주 집에 보내어 도주의 도장을 찍어 오게 하였다.⁴⁷⁾

46) 《邊例集要》 권14, 辛卯(1711) 5월.

47) 任守幹, 《東槎日記》, 坤, 新定條約.

그 내용은,

- 一. 馬島의 사람으로써 초량관 밖에 나가 여인을 强姦한 자는 律文에 의하여 死刑에 처한다.
- 一. 여인을 유괴하여 和奸한 자 및 未成年者를 强姦한 자는 영원히 유배하여 가둔다.
- 一. 여인이 관중에 잠입하였을 때, 잡아 보내지 않고 奸通한 자도 역시 그 다음의 律文을 적용한다.⁴⁸⁾

는 것으로, 이때 비로소 양국간에는 교간범죄인에 관한 약조가 맺어 지게 되었고, 이후 이 약조에 의하여 同律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 예로 1716년 부사 金始煥의 때에 목장에 살고 있던 金以石이 趙守命과 공모하여 여인 季月을 관중에 데리고 가서 왜와 교간하게 하였는데, 以石과 守命은 관문밖에 효시하고, 季月은 황해도 信川郡에 遠地定配하였으며, 奸倭 5인중 2인은 流竄之律을 적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⁹⁾

48) 약조의 원문을 소개하면,

朝鮮史料-《邊例集要》 권5, 壬辰(1712) 2월조. 任守幹, 《東抄日錄》, 坤, 新定約條.

- 一. 馬島之人 出往草梁館倭 强姦女人者 依律文論以一罪事.
- 一. 誘引女人和奸者 及强奸未成者 永遠流竄事.
- 一. 女人潛入館中 以不爲執送 因爲奸通者 用次律事. 辛卯十一月日 對馬島太守 着圖書

日本史料-宗家史料 《分類紀事大綱》31, (日本國會圖書館所藏)

- 一. 館倭出館强奸者以一罪論斷.
- 一. 和奸及强奸未成者永遠流竄.
- 一. 女人自入館所淫奸者以次律施行.

여기서 一罪는 같은 죄 또는 한가지% 죄로 직역이 되나, 그 의미는 斬罪에 해당되므로 사형이라고 의역하였다.

49) 《邊例集要》 권14, 雜犯. 이외에도 1726년 丙午 5월, 1738년 戊午 11월, 1786년 丙午 12월에도 交奸事件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조선인 공모자는 관문밖 효시, 여인은 遠地 定配하였고, 交奸倭人은 流竄之律에 따라 벌을 내리고 있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1690년을 전후하여 부산 초량왜관에서 발생한 〈交奸事件〉을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倭人作拏騰錄》과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678년 초량왜관이 신축되어 1872년 명치정부에 의하여 점령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왜인이 왜관에 거주하였는지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678년 4월 23일 豆毛浦倭館 으로부터 草梁倭館에 이전하는 날, 館守 이하 460여명의 對馬人이 新館에 들어갔다고 한다.⁵⁰⁾ 물론 이 인원이 상주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통교를 위하여 일시 내항하는 인원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가 상주하였고, 또한 이들은 모두 남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왜인과 조선여인 사이에는 종종 交奸事件이 일어났고, 이것은 당시 유교를 국시로 하고 있던 조선사회에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왜인과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적인 접촉을 일체 허용치 않았던 조선으로서 倭人交奸事件을 용납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처사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교간사건이 발각이 되면, 그 해당자를 모두 왜관의 관문밖에서 참수하여 효시를 하는 것으로 경계를 삼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왜관측에 대하여는 交奸倭人을 조선측과 똑같이 처리해주도록 同律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왜관(대마도)에서는 교간에 대한 약조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결국 〈同律之罪〉의 적용문제는 1690년과 1697년의 교간사건을 계기로 하여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館守에 대한 撤供 撤市를 비롯하여 圖書發給의 중지 등 구체적인 제제조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50) 田代和生, 《앞의 책》, 〈草梁倭館의設置と機能〉, 172~3쪽.

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측에서는 同律의 조항이 약조에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였고, 조선측에서는 1711년 辛卯通信使때 江戶에서 將軍에게 탄원할 것을 대마측에 사전통보함에 이르러, 三使와 對馬島主 사이에 교간에 관한 세가지 내용의 약조가 맺어짐에 의하여 1661년 이래 50여년간이나 문제가 되어 왔던 교간왜인에 관한 同律罪의 적용문제가 타결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약조가 맺어졌다고 해서, 교간사건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고, 또 약조의 내용대로 양측의 범죄자들이 똑같이 처리된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면 약조후에도 왜관에서의 교간사건은 계속되었고, 또한 처벌에 있어서도 조선측의 경우는 교간사건에 관여한 조선남자는 모두 館門外 梟示를 하였고, 여인의 경우는 遠地定配를 하였으나, 왜관(대마)측은 流竄之律에 의하여 縛送한다고 하였지만, 일부만 적용되었고 또 대마도로 박송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교간사건은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에 있어 官 중심의 접촉만을 다루는 정치·외교사적인 측면과는 달리 또다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간사건의 발단이나 처리과정을 통하여 당시 倭館 實態의 한단면을 볼 수 있으며, 양국인의 사회적인 가치관은 물론 상호인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재를 제시해준다. 뿐만 아니라 同律의 문제가 결국은 통신사의 파견을 통하여 江戶에서 〈新定約條〉의 방식에 의하여 타결된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이점에 있어 왜관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사건, 예를들면 行悖倭人·負債倭·密通·密賣 등 하층민의 접촉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을 통한 역사적 접근은 당시 왜관의 참 모습을 재현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의 실상을 조명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소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왜관을 통하여 본 ‘부산사람들의 生活史 研究’가 폭넓게 요망된다.